

# (가칭)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18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(가칭)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동 접근성과 안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는 중소규모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기능을 보완하여 모든 아동들에게 보다 넓고 좋은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, 아이돌봄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·활용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하여 초등돌봄 질을 견인하고자 운영하는 시설임
- 나. 특히 (가칭)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여성의 경제력 향상 및 성평등한 돌봄 환경조성을 위해 건립하는 ‘스페이스살림’ 내 설치하는 것으로, 초등학생 눈높이의 프로젝트 기획 운영 및 돌봄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,
- 서울시 ‘온마을 아이돌봄 추진지원단’ 과 긴밀한 업무 연계협력을 통한 종사자 역량강화, 돌봄자원 연계망 구축 등 업무를 체계적,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(가칭)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

- 소재지 : 동작구 대방동 340-4번지 외 3필지
- 규 모 : 스페이스살림 내 594.2 $m^2$ (1층 485.3 $m^2$ , 2층 110.9 $m^2$ )
- 준공일 : 2020. 6.(예정)
- 공간구성(안)

구분		면적( $m^2$ )	용도
지상	2층	110.9	사무공간, 놀이치료·특화 가족지원 등 집중 치유공간
	1층	485.3	프로젝트기반배움 가변형 교실, 다목적 놀이공간, 전문인력교육장 겸용

※ 1층 외부에 키움센터와 이어지는 옥외놀이터(78.33 $m^2$ ) 공간 별도로 조성예정

## 나. 위탁내용

- 위탁사무 :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- 위탁기간 : 2020. 6월 ~ 2023. 5월(3년간)
- 위탁유형 : 시설위탁
-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
- 조직 및 운영(안) : 3팀, 16명 (센터장 1, 종사자 15)

센터장(1)		
운영총괄		
<b>기획총무팀(6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기획조정 및 운영 총괄</li> <li>· 조직·인사, 예산·결산·지출, 총무</li> <li>· 콘텐츠 홍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</li> <li>· 시설안전관리 및 차량관리·운영</li> </ul>	<b>돌봄운영팀(6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콘텐츠 구성 및 운영</li> <li>· 문·예·체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</li> <li>· 돌봄서비스 제공 기획 및 운영</li> </ul>	<b>돌봄자원연계팀(3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</li> <li>· 돌봄자원 연계 및 인적·물적 인프라 구축</li> <li>· 중소규모 키움센터 교육 지원</li> </ul>

※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조성·운영 TF를 통해 적정 인력 및 조직구성, 세부 직무분석안 마련 예정

## ○ 위탁사무 내용

-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
-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관리 및 시설·물품 관리
  -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
  -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서비스 기획 및 운영
  - 권역 내 아이돌봄 자원 연계 및 인적·물적 연계기반 마련
  - 권역 내 아이돌봄 관계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
  - 온마을아이돌봄추진지원단과 업무 연계·협력 및 지원
  - 권역 내 중소 아이돌봄 시설 서비스 개선 및 이용 지원
  - 권역 내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
  - 제2호 거점형키움센터 콘텐츠 홍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
  -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서울시 초등돌봄 사업추진 관련 업무 협조
- '20년 소요예산(안) : 1,323백만원(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)

#### 다. 추진근거

-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
-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- 「온마을 아이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」 (시장방침 제33호, '19.3.6.)
- 「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·운영계획」 (아이돌봄담당관-5588, '19.4.29.)
- 「스페이스살림 자문단 회의결과 보고」 (여성정책담당관-7969, '19.5.22.)
- 「2020년 거점형키움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」  
(아이돌봄담당관 - 10676('19.8.23.))
- 「2019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 
후속절차 안내」 (조직담당관-11925, '19.9.19.)

## 라. 민간위탁 필요성

-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권역 내 초등학생 대상 문화·놀이·예술 체험 프로그램 기획·운영, 돌봄서비스 제공, 지역사회와 수평적 연계를 통한 아이돌봄 협력망 구축 및 인적·물적 아이돌봄자원 연계 등 기능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시설임
- 특히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여성의 경제력 향상 및 성평등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 대표공간인 스페이스살림 내 설치하는 것으로,
  -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내 운영중인 '온마을 아이돌봄 추진지원단'과 긴밀한 업무 연계·협력, 권역 내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및 교육지원 등 기능을 유연하게 수행하기 위해 민간자원을 활용한 업무수행이 필요함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#### ○ 아동복지법 제44조의2

**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**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학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

**제7조(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)**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**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**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9.3.18, 2009.7.30, 2014.5.14>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0년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의 예외적 동시상정

○ 서울시 스페이스살림 조성 과정에서 ‘여성 창업 기능’ 과 함께 ‘성평등한 돌봄환경 조성 기능’이 강화됨에 따라, ‘19.5월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’를 스페이스 살림 설계에 반영하기로 하였고, 이후 거점형 센터로서의 면적 확정과 거점형으로서 기능구성, 기본적인 운영 서비스 사항의 정립이 ’19.8월경 구체화되었음

- 이에 ’19.8월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및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안건 제출, 심의(’19.9.6.) 등 절차 진행이 가능하였고, 조직담당관 적정통보(’19.9.19.)에 따라 부득이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을 예외적으로 동시상정 하게 되었음

※ 작성자 : 아이돌봄담당관 초등돌봄운영팀 박진영 (☎ 2133-4944)